

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협조요청

〈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〉

「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금지」 시행 예정('18.9.21)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 드림

□ 단속근거

- 산업통상자원부, 「친환경자동차법」 개정으로 위반행위 금지 및 단속근거 마련
 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, 시행령 개정(18.9.21 시행)

□ 단속대상 : 급속충전시설 203개소

| 구분 | 실내(74) | 실외(129) | 비 고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|
| 공공(125) | 38개소 | 87개소 | 공공기관 주차장(38), 공영주차장(63), 공원(8), 공중전화(4), 문화시설 등(12) |
| 민간(78) | 36개소 | 42개소 | 대형마트(35), 자동차정비센터(15), 대학교(7), 주유소 등(21) |

□ 단속내용

| 연번 | 위 반 행 위 | 과태료 금액 |
|----|---|--------|
| 1 | 전기자동차 및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| 10만원 |
| 2 |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,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,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| 10만원 |
| 3 |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| 10만원 |
| 4 |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| 10만원 |
| 5 |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| 20만원 |
| 6 |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| 20만원 |
| 7 |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| 10만원 |

* 연번 5, 6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함(고시예정)

□ 단속방법

- 일정기간 계도기간(9.21~10.31) 운영 : 수시 순찰, 위반자 계도

- ① 기간 중 주 1회 순찰 실시(10월 중 4회)
- ② 충전시설에 대한 순찰 일시는 (붙임 4)에 기록
- ③ 순찰 중 (붙임 1)의 위반행위 발견 시 계도하고 (붙임 3) 안내사항 기록
 - ▶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
 - ▶ 위반내용 기록 : 일시, 장소,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사진
 - ▶ 위반자에게 법 개정사항을 담은 리플릿 배포(산자부 고시 공포후 제작)
- ④ 기후대기과에 (붙임 2, 3) 실적보고
 - ▶ 10월 첫째 월요일(10.8, 10.15, 10.22, 10.29)

- '18.11월 부터는 집중 단속

- 1개월간 순찰시 발생한 위반유형 및 계도 건수 파악 : 향후 단속업무 활용
- 단속에 필요한 안내장, 스티커 등 준비

〈 기후대기과 추진사항 〉

-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표시 안내판 제작 부착 : 단속대상 203개소



-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시민홍보
 - ▶ 공중파 생활정보프로그램 노출, 옥외전광판 표출, 시홈페이지 활용 등
 - ▶ 자동차 사용자, 전기차 이용자 대상 동참유도 홍보 : 교통방송, 문자발송 등
 - ▶ 충전시설 관리자 대상 법 개정내용 안내
- 친환경자동차법 개정내용 안내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 배포

□ 행정사항

- 문의사항 : 기후대기과 담당 임영택(02-2133-3622)

[붙임 1]

과태료 부과기준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, 시행령 21조 관련(별표)

| 위 반 행 위 | 근거 법조문 | 과태료 금액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전기자동차 및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| 법 제16조제2항 (법 제11조의2제4항 위반) | 10만원 |
|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,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,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| 법 제16조제1항 (법 제11조의2제5항 위반) | 10만원 |
|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| 법 제16조제1항 (법 제11조의2제5항 위반) | 10만원 |
|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| 법 제16조제1항 (법 제11조의2제5항 위반) | 10만원 |
|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| 법 제16조제1항 (법 제11조의2제5항 위반) | 20만원 |
|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| 법 제16조제1항 (법 제11조의2제5항 위반) | 20만원 |
|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| 법 제16조제1항 (법 제11조의2제5항 위반) | 10만원 |

[붙임 2]

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순찰 실적 보고

○ 보고지역 :

○ 보고자 :

○ 순찰 및 계도 실적

| 일시 | 충전시설 설치지점 (주소지) | 순찰인원 | 순찰실적 | 계도실적 등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|
| 2018.10.1 | 금천구 00대로 | 00등 4명 | 00등 3개소 | 충전구역내 일반차량 불법 주차 계도 1건 (계도 안내문 참고)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
○ 행정사항

- 순찰시 충전시설(구역) 문제점, 건의사항 등 기재

[붙임 3]

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(계도) 안내

○ 계도일시 : 2018년 월 일 (요일)

○ 계도장소 :

○ 계 도 자 :

○ 계도내용

- 일 시 :

- 장 소 :

- 차량번호 :

- 차 명 :

- 소 유자 :

- 운전자 :

○ 계도내용 : (과태료부과사항에 맞게 자세히 기재)

〈 증거사진 1 〉 충전시설(구역)과 차량이 나오도록 전체장면

(위반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)

〈 증거사진 2 〉 충전시설(구역)과 차량이 나오도록 전체장면



〈 증거사진 3 〉 위반차량 번호판 인식

